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56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	2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18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일터 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안 제171조).

1. ~ 4. (생략)	<u>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자</u>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분화된 생산 현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응하고 사업장의 능동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¹⁾ 법률상의 현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나 역할의 실질적인 한계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비판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

1) 1995년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시범 실시되었고, 1996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

도록 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활성화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2026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내용이 제23조제4항에 규정됨에 따라 개정안 제172조의 인용조문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19일 법률 제21374호로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위촉을 의무화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감독을 하는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반영되었으며, 사용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벌칙을 신설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제도를 통해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벌칙 신설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5